

case
2

코코넛 밀크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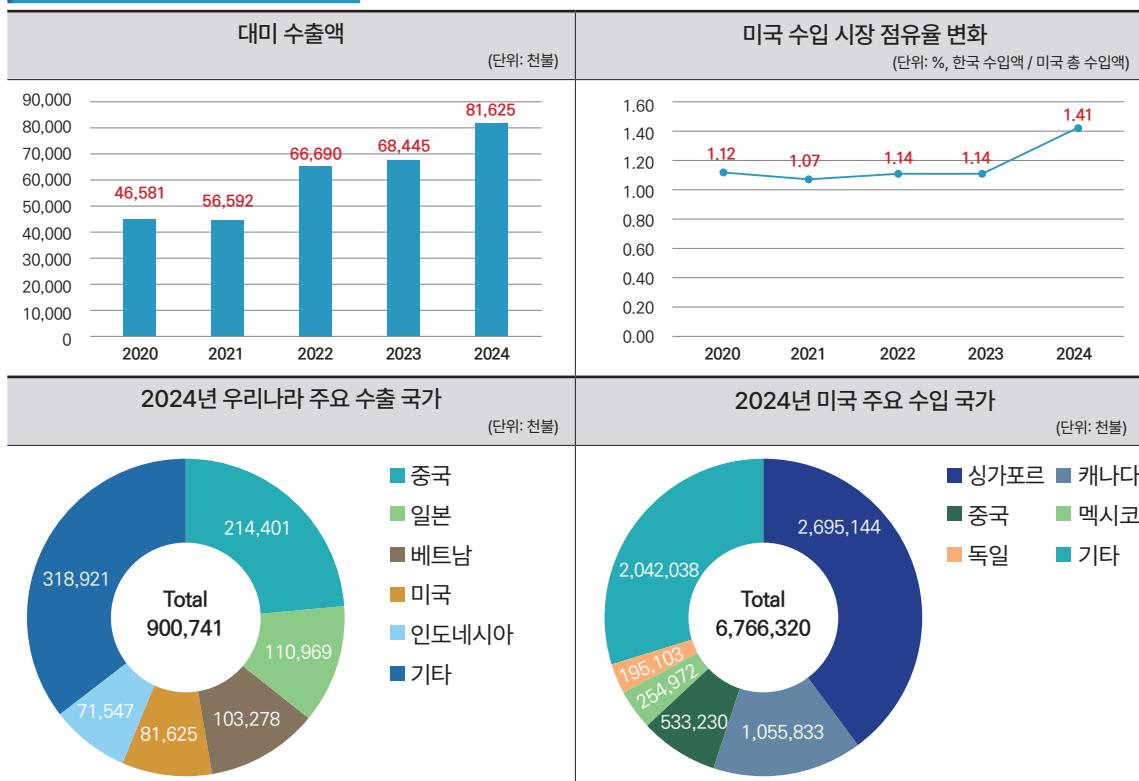
사례명	코코넛 밀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12079 (2020.06.05.)
사실관계	코코넛 밀크 원액, 구아검, 물 등 원재료를 모두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하여 최종 제품인 코코넛 밀크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CBP 『19 C.F.R. § 134』에 따라, 일국에서 모든 재료가 조달되어 생산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아닌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가 원산지이므로 코코넛 밀크의 원산지는 스리랑카임</p>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

I 품목개요

품목정보

HS Code	제2106.90호
세율	한국 기본세율
	8~30%
	미국 기본세율
	0~10% or 종량세
	한-미 FTA 협정세율
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<p>1. 제2106.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0805호, 제2009호 및 제2202.90호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2. 제2106.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.</p> <p>가.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.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나.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, 제2202.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. 다만, 단일 과실·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(single strength)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%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</p> <p>3. 제2106.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: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(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에서 생산된 것</p> <p>4. 제2106.90호의 당시럽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5. 제2106.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%를 초과하는 것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%를 초과하는 제1901.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6. 제2106.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%를 초과하는 것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7. 제2106.90호의 인삼 조제품: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(제1211.20호 및 제1302.19호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8. 기타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</p>

제2106.90호 시장 정보



❖ 자료: K-stat

II 판정사례

사례명 [코코넛 밀크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12079 (2020.06.05.)

사실관계

요청자 Brad's Organic, LLC (대리인: Joint Agri Products Ceylon (Pvt) Ltd)

제품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코코넛 밀크 제품 (지방함량 11% 및 18% 두 종류)
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코코넛 밀크 원액 49% 물 49% 구아검(guar gum) 2%
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품 제조시 사용되는 원재료용
완제품 HTSU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106.90.9890

제조공정



01

스리랑카 내에서
원재료 조달



02

스리랑카 내에서
가공 및 제조



03

소매용 포장



04

미국 수출

상세공정 1. 원재료 모두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

2. 스리랑카 내에서 가공 및 제조

3. 소매용 용기에 포장

4. 미국으로 수출

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및 분석

1

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- ▣『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』에 따르면,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, 지워지지 않게,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
- CBP 『19 C.F.R. § 134』 규정은 『19 U.S.C. § 1304』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함
 - CBP 『19 C.F.R. § 134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을 발생 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
 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*, 69 CCPA 152, 681 F. 2d 778 (1982)

- 그러나,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*, 3 CIT 220, 542 F. Supp. 1026, 1029 (1982), aff'd, 702 F.2d 1022 (Fed. Cir. 1983)

-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evidence)하여 이루어짐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W968434* (2007)

❖ 참고 판례: *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*, 11 CIT 470, 478, 664 F. Supp. 535, 541 (1987)

판정 결과

- ▣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외국산 물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, 자국산 재료만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그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되므로, 완제품 코코넛 밀크 제품의 원산지는 스리랑카임

기타 의견

- ▣ 해당 제품은 『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(42 U.S.C. § 262)』의 적용 대상이며, 미국 식품의약국(FDA)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

결론

- ✓ 모든 재료가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되어 생산되었으므로 원산지는 스리랑카임

 시사점

- 실질적 변형 기준은 2개국 이상의 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에 적용됨

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12079 (2020.06.05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12079>
- CBP Ruling (HQ) W968434 (2007.01.17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W968434>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&num=0&edition=prelim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
- 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283980/uniroyal-inc-v-united-states/>
- 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 (1987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504219/ferrostaal-metals-corp-v-united-states/?q=Ferrostaal+Metals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